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에 대한 출자 근거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8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에 대한 출자 근거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8. 29.
3. 회 부 일: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음(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획득에 체육기금의 출자 근거 및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취지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국가 체육재정 기여도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 신설을 통한 발행사업의 안정적 위탁운영이 필요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에 대한 출자 근거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계정관리기관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6.-----제6호까지의 -----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④ ----- ----- -----

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 · 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	--

나. 검토의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부터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환급금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 운영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¹⁾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 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수탁사업자는 필요한 자본금을 자체 조달하되, 총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넘겨주고, 공단은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였음²⁾.

[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투표권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스포츠 레저게임
사업 목적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기금조성
사업 기관	(승인·감독) 문체부/(발행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수탁사업자) (주)스포츠토토코리아 *민간위탁(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주요 연혁	• ('99. 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공포 (투표권사업 도입근거 신설) • ('00.12.) 수탁사업자 선정 (주)한국타이거폴스, 이후 (주)스포츠토토로 변경) • ('01.10.) 발매 개시 • ('02.10.) 발매 중단 (수탁사 재무유동성 악화) • ('03. 7.) 발매 재개 (수탁사 최대주주 변경) • ('12.11.~'13.12.) 투표권사업 공영화 법안 발의 및 개정 추진 *수탁사 경영진 횡령·배임 발생(형사 절차 진행, '12.7.~'14.9.) • ('15. 4.) 수탁사업자 선정(주)케이토토, '15.7.~'20.6.) *수탁사 입찰과정 중 소송 등 발생으로 계약 만료된 과거 수탁사가 한시적 연장 운영('14.7.~'15.6.) • ('20.1.~7.) 수탁사업자 선정(주)스포츠토토코리아, '20.7.~'25.6.) 및 사업개시 • ('22. 1.) 공영화 법안 개정(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환급금)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 수탁사의 부조리, 전문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의 변경(공영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2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100% 출자회사에의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³⁾⁴⁾.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에 따르면 개정 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수탁사업자는 위탁계약기간('20. 7. 1.~'25. 6. 30.) 동안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바⁵⁾,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출자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전담 자회사의

3) (추진경과) 개정안 발의(이상헌의원실, '20.9.17.) →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의결('21.12.8.) →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21.12.9., 대안반영폐기) → 법사위 의결('21.12.30.) → 본회의 의결('21.12.31.) → 공포('22.1.1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 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또는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회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전담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동 사업의 취지에 따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문체부에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 전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고⁶⁾, 이를 위해 개정안 처럼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문체부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상당한 매출규모와 사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① 정부 체육예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대규모 사업

(‘23년도 매출: 6조 1,367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1조 8,518억원)

② 상품운영 기술, 대규모 발매·금융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전국 6,500개의 판매망 관리 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vs 기존 자회사 주요사업 및 조직 등 비교(‘24.11.12.기준)

문 의 처

02)6788-5375

구분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현 수탁사 기준)	공단 기존 자회사(한국체육산업개발)
주요사업	• 투표권 상품 개발 및 발행 • 배당률 고지 및 환급 등 상품 운영 • 투표권 시스템 운영 및 수익금 조성	• 올림픽공원 및 경륜·경정시설 유지 관리 • 시설 대관 및 미화 등
현원/조직	• 200명 • 대표이사, CRO(chief Risk Officer), 6본부, 32팀	• 1,373명 • 대표이사, 7실, 17팀
인적구성	• 행정 59명(경영지원인력 20명 포함) • 상품개발 및 운영 34명 • 시스템 58명, 판매점관리 49명	• 대표이사 1명 • 일반직 213명 • 기타직(경비, 미화 등) 1,159명

③ 단일사업 재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인 사업혁신 동력 유지

④ 신속하고 탄력적인 리스크 관리 및 유연성 강화

[참고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현황

□ 체육진흥투표권 유형

구 분	주 요 내 용		
상품종류	○ 총 20종(고정환급률식 18종, 고정배당률식 2종) * 증량발행 제외시 17종		
	구 분	고정환급률식(토토) 상품	고정배당률식(프로토) 상품
	운영방식	●전체 투표금액 중 고정된 환급비율 (50%)로 적중환급금 지급	●운영자가 경기결과별로 고정된 적중 배당률(Odds) 제시
	환 급 률	●고정 (50%)	●변동 (연간 63.5±5%)
	매출점유 ('23년 기준)	●7.8%	●92.2%
투표금액	○ 회차당 최소 100원~1,000원, 최대 10만원		
발행대상 종목·경기	○ (종목)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 및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 씨름 : 종목 내부사유로 '07년부터 미발행 ○ (경기) 국내외 경기 (월드컵 등 국제대회 포함)		
발행회차	○ 연간 1,200회 내외 (문체부장관 승인)		
발매방법	○ 전국 6,500여 판매점, 인터넷 발매사이트(www.betman.co.kr)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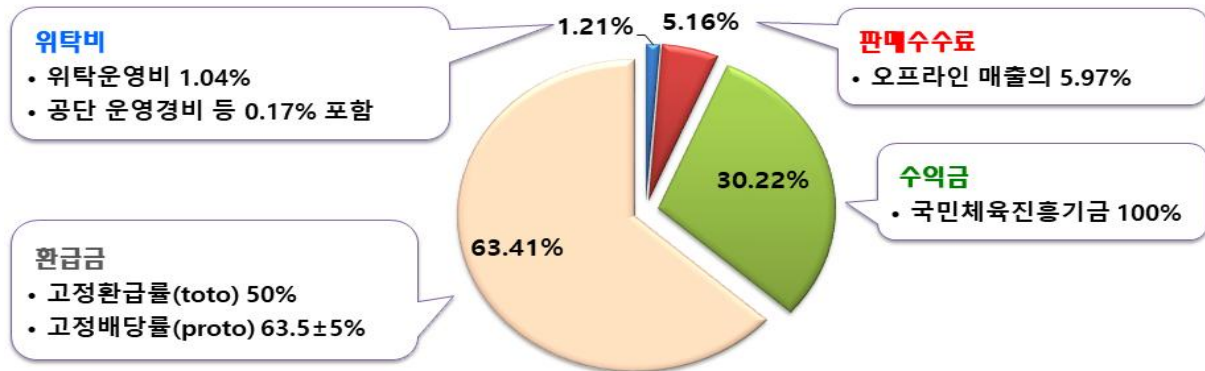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계획)
매출액(일반발행)	48,928	56,195	58,090	60,985	67,046
수익금(체육진흥기금)	15,293	17,728	18,262	18,518	21,037
위탁운영비	3,174	3,567	3,656	3,883	4,3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비율 ('23년 실적 기준)]



* 증량발행 제외('23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국제대회 조직위 84억원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現 수탁사업자 현황

- 회 사 명 : (주)스포츠토토코리아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길 12 해남2빌딩 5층)
- 대 표 자 : 송영웅 (前 한국일보 미래기획실장)
- 자 본 금 : 400억원 (자금대행 협약사 : 우리은행)

주 주	에이스침대	엠파크	비바리퍼블리카	한국일보	코넥	한글과컴퓨터
지분율 (자본금)	38% (152억원)	27% (108억원)	15% (60억원)	10% (40억원)	5% (20억원)	5% (20억원)

* 엠파크·한국일보 : 동화그룹(동화기업(건축자재)) 계열사

- 조 직 : 1대표이사/1감사/6본부(단)/11부문(실)/32팀, 인력:210명(선수단 별도)
- 위탁운영기간 : '20. 7. 1. ~ '25. 6. 30. (5년)

□ 체육진흥권 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 수탁사업자 선정 승인 및 위탁운영비율 지정 ○ 연간 사업계획 승인, 주최단체 지정 등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 조성, 제도개선 및 규제장치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행사업자)	○ 수탁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 상품발행계획 심사·승인, 수익금 배분 ○ 사업 건전화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계획 수립·시행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련 관리·감독
스포츠토토코리아 (수탁사업자)	○ 상품발행계획 작성·승인요청, 발매일정·배당률 고지 및 발매 ○ 발매현황·대상경기 모니터링, 적중결과 공고, 환급금 등 지급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기타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관련 업무
우리은행 (자금대행사업자)	○ 환급금 지급(환급금 과세* 포함), 투표권 자금관리 업무 * 과세기준 (환급금의 22% :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 100배 초과 적중(적중금 10만원 초과) 또는 2백만원 초과 적중
판 매 점	○ 투표권 판매 및 소액 환급금 지급(전국 6,500여 개소)
주최단체	○ 연간 경기일정 제출, 경기개최, 경기결과 확정·통보 ○ 경기 관련자료·변경사항 통보

[참고 2] 비용추계(출처: 국회예산정책처)

1. 전제

- 공단에 따르면 출자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 설립을 2024년 10월 말 예정하고 있어, 첫 출자연도를 2024년으로 총 3차례 100억씩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추계기간은 그에 맞추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2.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 신설에 따른 출자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100억원, 2028년까지 5년간 총 300억원(연평균 6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출자 (안 제22조)	10,000	10,000	10,000	-	-	30,000	6,000

- 참고로, 개정안은 안 제20조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배당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12.5년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

(단위: 억원, %)

구분	출자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7차 연도	8차 연도	9차 연도	10차 연도	11차 연도	12차 연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누적 출자액	100	200	300	-	-	-	-	-	-	-	-	-	-
누적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입	0	1,730	3,613	3,776	3,937	4,098	4,258	4,341	4,341	4,384	4,428	4,472	4,517
지출	(4)	(1,728)	(3,587)	(3,742)	(3,896)	(4,051)	(4,025)	(4,299)	(4,299)	(4,342)	(4,386)	(4,429)	(4,474)
영업이익	(4)	2	26	34	41	47	53	42	42	42	43	43	43
당기순이익*	(4)	1	20	26	31	36	41	32	32	32	33	33	33
회수액**	-	-	17	23	28	32	37	29	29	29	30	30	30
(비율)	-	-	(5.67)	(7.67)	(9.33)	(10.67)	(12.33)	(9.67)	(9.67)	(9.67)	(10.00)	(10.00)	(10.00)
누적회수액	-	-	17	40	68	100	137	166	195	225	254	284	315
(비율)	-	-	(5.67)	(13.33)	(22.67)	(33.33)	(45.67)	(55.33)	(65.00)	(75.00)	(84.67)	(94.67)	(105.0)

* 당기순이익은 세후영업이익과 동일하다고 가정, 영업이익 중 법인세율(23.2%) 차감

**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을 가정, 상법상 10%의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유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